

내부정보관리규정 개정 공고

당사는 2017년 11월 1일 개최된 이사회를 통하여, 당사의 내부정보관리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. 당사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코스닥협회가 정하는 “코스닥상장법인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”을 참고하여 내부정보관리규정을 개정하였으며, 동 개정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표합니다.

2017년 11월 1일

신라젠 주식회사

대표이사 문은장

